

A/HRC/54/26

##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및 방임

Violence against and abuse and neglect of older persons

(August 7, 2023)

클라우디아 말러,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 전문가\*

(Claudia Mahler,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

### **요약(Summary)**

인권이사회 결의안 51/4(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4)에 따라 제출된 이 보고서에서,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 전문가인 클라우디아 말러는 보고 기간 동안의 활동 개요와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주제별 분석을 제공한다. 독립 전문가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학대의 징후를 조사하고 예방 및 보호 조치를 검토한다. 보고서는 국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일련의 권고사항으로 마무리된다.

\* 제출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 보고서를 표준 발간일 이후에 발간하기로 합의하였다.

## 목차(Contents)

- I. 서론(Introduction)
- II. 독립 전문가의 활동(Activities of the Independent Expert)
  - A. 국가 방문(Country Visits)
  - B. 기타 활동(Other activities)
- III.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및 방임(Violence against and abuse and neglect of older persons)
  - A. 정의(Definition)
  - B. 연령주의, 주요 근본 원인(Ageism, the main root cause)
  - C. 교차성(Intersectionality)
  - D. 국제 및 지역 법률 및 정책적 틀(International and regional legal and policy frameworks)
  - E. 데이터(Data)
- IV. 학대의 징후(Manifestations of abuse)
  - A.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 B. 심리적 및 정서적 학대(Psychological and emotional abuse)
  - C. 성적 학대(Sexual abuse)
  - D. 재정적 및 물질적 학대(Financial and material abuse)
  - E. 방임(Neglect)
  - F. 노인 혐오 발언(Hate speech against older persons)
  - G. 특수 상황(Specific contexts)

- V. 노인에 대한 폭력 및 학대, 방임 문제 해결(Addressing violence against and abuse and neglect of older persons)
  - A. 학대 방지 및 보호(Prevention and protection against abuse)
  - B. 법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
- VI. 결론 및 권고사항(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A.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s to States)
  - B. 기타 권고사항(Other recommendations)

## I. 서론(Introduction)

1. 이 보고서는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 전문가인 클라우디아 말러가 인권이사회 결의 51/4(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4)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는 보고 기간 동안 독립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주제별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 II. 독립 전문가의 활동(Activities of the Independent Expert)

### A. 국가 방문(Country Visits)

2. 보고 기간 동안 독립 전문가는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나이지리아,<sup>1</sup> 2022년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방글라데시,<sup>2</sup>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했다.<sup>3</sup> 독립 전문가는 방문 전, 중, 후에 그녀를 초청한 정부에 감사를 표했으며, 유익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독립 전문가는 또한 몰도바 공화국의 초청에 감사하며 2023년 11월로 예정된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

### B. 기타 활동(Other activities)

3. 보고 기간 동안 독립 전문가는 노인 인권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전달한, 그리고 다른 여러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들과 공동으로 정부에 전달한 내용을

---

<sup>1</sup> See [A/HRC/54/26.Add.1](#).

<sup>2</sup> See [A/HRC/54/26.Add.2](#).

<sup>3</sup> See [A/HRC/54/26.Add.3](#).

다루었다. 그녀는 또한 2022년 세계 노인의 날(2022 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을 기념하는 노인 여성의 회복력에 대한 성명, 그리고 2023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 2023)을 기념하는 노년층의 성별 기반 폭력에 관한 데이터 수집에 관한 성명 등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권한 보유자들과 함께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4. 독립 전문가는 그녀의 권한에 따라 고령화에 관한 개방형 실무 그룹의 13차 세션에 참여하여 규범적 의견과 노인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관한 두 전문가 패널 논의에 기여했다. 독립 전문가는 실무 그룹이 31/1 결정을 채택한 것과<sup>4</sup> 기존의 국제적 틀 고려 및 노인 인권 보호의 격차를 가장 잘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식별하기 위해 브라질과 포르투갈을 공동 촉진자로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
5.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독립 전문가는 여러 국제 회의, 지역 및 국가 회의, 그리고 행사 및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노인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발언했다. 그녀는 또한 2022년 세계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 in 2022)에 열린 노인 여성 인권에 관한 여러 부대 행사에 참여했으며, 여성 지위에 관한 67차 유엔 위원회에서 돌봄 의제의 혁신과 기술적 변화에 대한 여러 부대 행사에 참여했다.
6. 이 보고서의 준비를 위해 독립 전문가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84건의 서면 제출물을 받았다.<sup>5</sup> 독립 전문가는 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기여한 모든 이에

---

<sup>4</sup> [A/AC.278/2023/2](#), para. 30.

<sup>5</sup> See <https://www.ohchr.org/en/calls-for-input/2023/report-violence-abuse-and-neglect-older-persons>.

게 감사한다.

### III.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및 방임(Violence against and abuse and neglect of older persons)

7. 건강 관리와 영양 섭취의 긍정적인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 노인의 수명이 길어지고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느리지만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2050년에는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노인이 폭력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sup>6</sup>
8. 노인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간과되고 있으며, 이 이슈는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수준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sup>7</sup> 이는 현상에 대한 연구 부족의 결과로 비롯된 이해 부족이 그 이유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노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안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다차원적인 영향으로 인해 충분한 개입과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9.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및 방임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다.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 무력 충돌 및 기후 변화 등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노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는 경제적 후퇴로 이어지

---

<sup>6</sup> *World Population Ageing 2019*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20).

<sup>7</sup> Christopher Mikton and others, "Factors shaping the global political priority of addressing elder abuse: a qualitative policy analysis", *The Lancet Healthy Longevity*, vol. 3 (August 2022), p. e531.

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지원 구조에 더 많은 부담을 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노인이 폭력 행위로 고통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 6명 중 1명이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한다.<sup>8</sup>

### A. 정의(Definition)

10. "노인 학대(elder abuse)" 또는 "노인에 대한 학대(abuse against older persons)"에 대해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다.<sup>9</sup> 세계적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노인 학대", "노인에 대한 폭력", "노인 혹사", "노인 학대 및 착취" 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다.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면 그에 따라 뉘앙스도 달라진다.
11. 유엔의 논의와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공한 정의이다. "노인 학대(abuse of older people)는 서로 간의 신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한 번 혹은 반복적인 행위 또는 적절한 행동의 결여로 노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인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며 신체적, 성적, 심리적 및 정서적 학대, 재정적 및 물질적 학대, 유기, 방임, 그리고 존엄과 존중의 상실을 포함한다."<sup>10</sup>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능동적 또는 수동적 행위는 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sup>11</sup> 개인, 기관 또는 사회에 의해 저

---

<sup>8</sup> See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abuse-of-older-people>.

<sup>9</sup> Mikton and others, "Factors shaping the global political priority of addressing elder abuse".

<sup>10</sup> See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abuse-of-older-people>.

<sup>11</sup> Submissions from Vidovićová and Restabus.

질러질 수 있다.<sup>12</sup>

12. 대부분의 정의는 노인 학대의 다섯 가지 유형을 (a) 신체적 학대, (b)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 (c) 성적 학대, (d) 재정적 또는 물질적 학대, (e) 방임 등으로 나눈다.<sup>13</sup> 독립 전문가는 노인에 대한 혐오 발언이 노인 학대의 추가적인 유형임을 지적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독립 전문가는 본 보고서에서 “노인 학대(abuse of older persons)”의 의미를 이러한 모든 형태의 학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일부 사항에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신뢰 기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일부 정의에는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sup>14</sup> 또한 많은 국가의 정부는 그들의 국가적 상황에 알맞은 정의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sup>15</sup>

## **B. 연령주의, 주요 근본 원인(Ageism, the main root cause)**

14. 연령주의(ageism)는 노인 학대의 주요 위험 요소이다. 독립 전문가에 의해

---

<sup>12</sup> Submissions from Vidovićová, Restabus, AGE Platform Europe and Sage Advocacy.

<sup>13</sup> Etienne G. Krug and others, eds.,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Geneva, WHO, 2002), p. 126; and Hannah Bows and Bridget Penhale, “Elder abuse and social work: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 48, No. 4 (June 2018), p. 874.

<sup>14</sup> Hannah Bows and others, *Perpetrators of Domestic Abuse against Older Adults: Characteristics, Risk Factors and Professional Responses* (Durham,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Durham University, 2022), p. 7.

<sup>15</sup> [A/HRC/36/48/Add.2](#), para. 38; and submissions from Malta and Saudi Arabia.



정의된 바와 같이, 연령주의는 실제 연령 또는 개인이 "늙었다"는 인식에 근거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적 행동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sup>16</sup>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은 연령주의 개념의 기초가 되며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및 방임 등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 인구는 사회에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sup>17</sup> 연령에 관한 고정관념은 노인 학대를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살핌과 지원, 구제책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up>18</sup>

15. 현재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에는 연령 차별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금지 조항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조약에서 연령을 포함한 "기타 지위(other status)"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에 합의했다.<sup>19</sup> 연령 차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는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 대우가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조약에서 당사국들이 인종차별, 성차별 및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존 조약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16. 세계보건기구(WHO)는 연령주의에 맞서는 데 있어 법률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연령주의를 거부하는 법과 정책을 통해 사회 규범을 증진하면 잠재적으로 사람들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으며, 이는 노년기의 폭력, 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sup>20</sup>

<sup>16</sup> [A/HRC/48/53](#), para. 21.

<sup>17</sup> *Ibid.*, para. 62.

<sup>18</sup> See [A/HRC/49/70](#).

<sup>19</sup> *Ibid.*, para. 17.

<sup>20</sup> WHO, *Global Report on Ageism* (Geneva, 2021), p. 95.

### C. 교차성(Intersectionality)

17. 연령과 다른 차별 요인이 교차할 때, 노인이 학대를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편견이 결합된 연령주의적 고정관념과 다른 형태의 편견이 교차하게 되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이주 또는 강제 이주 상태, 신분,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는 노인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sup>21</sup> 이는 의료, 주거, 고용 및 교육 등 기본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 기존의 장벽을 악화시켜 모든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18. 교차적 및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 노인들은 경제적 및 주거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로 인해 폭력과 방임이 발생할 수 있는 의존적 상황에 처할 위험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나이든 여성은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더 높으며 안전한 주택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sup>22</sup> 그들은 평생 동안 소득 불평등과 돌봄 책임으로 인해 노인 남성보다 경제적 자율성이 낮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반을 둔 관습이 표준화되면서 노년기에 의존도가 증가하였고, 노인 여성이 가정 학대를 당할 위험이 더 커졌다.<sup>23</sup> 노인 장애인은 또한 종종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접근 가능한 정보와 전문 서비스의 부족 뿐만 아니라 학대를 인지 및 신고하고, 학대로부터 탈출하기가 어렵다.<sup>24</sup> 또한 여러 기관에서 노인 여성과

<sup>21</sup> [A/HRC/48/53](#), paras. 51–58.

<sup>22</sup> [A/76/157](#), paras. 34 and 35.

<sup>23</sup> Submission from Chile.

<sup>24</sup> See SafeLives, “Safe later lives: Older people and domestic abuse” (2016).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폭력, 학대 및 방임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 권리 특별 보고관은 치매와 같은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학대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sup>25</sup>

19. 노년기의 소외와 고립은 성차별, 장애인 차별,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와 같은 다른 형태의 낙인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사회적 배제로 인해 표적이 될 위험이 높아지고 폭력 사례를 신고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sup>26</sup> 이러한 이유로 특히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일부 노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인은<sup>27</sup> 거부와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평생 동안 성적 지향 및/또는 성 정체성을 비공개로 유지한다.<sup>28</sup>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해 개방적이었던 사람들은 노년에 가족의 지원을 구하거나 요양 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이를 숨길 수 있다.<sup>29</sup> 또한 적절한 지원의 부족과 가족과의 비자발적인 분리는 강제로 추방된 노인을 방임, 신체적 학대 또는 착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격리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다.<sup>30</sup> 교차 형태의 차별을 경험할 위험이 있는

---

<sup>25</sup> [A/74/186](#), para. 37.

<sup>26</sup> Christine A. Walsh and others, "Elder abuse and oppression: voices of marginalized elder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vol. 23, No. 1 (2011), p. 34.

<sup>27</sup> [A/74/181](#), para. 46.

<sup>28</sup> Sue Westwood, "Abuse and olde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 (LGBT) people: a commentary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vol. 31, No. 2 (2019), pp. 103–106.

<sup>29</sup> [A/74/181](#), para. 46.

<sup>30</sup> See UNHCR and HelpAge International, "Working with older persons in forced displacement" (UNHCR, 2021), p. 6; and <https://www.unhcr.org/handbooks/ih/age-gender-diversity/older-refugees>.

노인에게 지원하는 서비스가 단발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sup>31</sup>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문제와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모두 다루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 노인 학대에 대한 연령 및 교차 정체성의 영향에 대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 집단에 속한 노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 및 방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립 전문가는 친족 구조의 중요성과 원주민 공동체의 공동 재산에 대한 공유, 상호주의 및 기대와 관련한 문화적 규범으로 인해 노인 원주민이 학대를 경험하고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sup>32</sup> 적절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모든 다양성 속에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공공 정책을 알리는 데 중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정 폭력이나 기타 형태의 폭력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지만 노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연령과 기타 차별 요소의 교차점에 대해서는 더더욱 언급하지 않는다.<sup>33</sup>

#### **D. 국제 및 지역 법률 및 정책적 틀(International and regional legal and policy frameworks)**

21.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은 기존의 법적 수단을 통해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한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

---

<sup>31</sup> Submission from Ireland.

<sup>32</sup> Submissions from New Zealand and the Caxton Legal Centre.

<sup>33</sup> Submission from Portugal.

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3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비하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5조)을 강조하고 있다. 고문 방지는 고문 및 기타 잔인한, 비인도적, 그리고 비하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조).<sup>34</sup> 장애인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명시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16조 및 17조). 유엔 노인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은 노인이 존엄과 안전함 속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원칙 17).

22. 인권이사회 조약기구(Human Rights Council treaty bodies)도 노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일반적인 논평을 채택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일반권고 27항(2010)에서 노인 여성에 대한 폭력과 학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위원회는 일반권고 35항(2017)에서도 모든 연령층의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고 있다. 일반 권고사항에는 노인 여성에 대한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

<sup>34</sup> See also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s No. 19 (1992)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No. 35 (2017) on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updating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않지만, 위원회는 일반권고 27항(2010)을 참조하고 연령이 여성이 직면하는 폭력의 본질과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12항). 나아가 비국가 행위자가 자행하는 폭력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다.<sup>35</sup> 실제로 존중, 보호 및 이행에 대한 의무와 보호를 위한 의무에는 국가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지속되는 폭력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현재 인권의 틀에서 노인들에 대한 폭력, 학대 및 방임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노인이 직면하는 독특한 위험을 다루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sup>36</sup>

23. 지역적 차원에서 노인인권보호에 관한 미주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은 차별을 방지하고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9조). 협약은 노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차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다중차별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sup>37</sup>

24. 아프리카 노인의 권리에 관한 인권 헌장 의정서(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는 노인이 폭력, 학대 및 방

---

<sup>35</sup> See also the working paper prepared by OHCHR containing an update to the 2012 analytical outcome study on the normative standard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older persons, para. 124. Available at <https://social.un.org/ageing-working-group/documents/eleveth/OHCHR%20HROP%20working%20paper%2022%20Mar%202021.pdf>.

<sup>36</sup> Ibid., paras. 121 and 123. See also submissions from the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Canada and the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Senioren-Organisationen (BAGSO).

<sup>37</sup> See also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nd National Protection Systems in the Americas* (2022), paras. 377–379.

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인정한다(8조 및 9조).

25. 유럽인권법체계(European human rights law framework)에는 폭력,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하여 노인의 보호만을 위한 구체적인 조약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유럽인권협약,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은 생명권과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노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장한다(2조, 3조, 8조). 여성 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유럽이사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노인 여성까지 포함한다.
26. 유럽 이사회와 같은 지역 기구는 회원국에 학대 예방을 개선하고 학대와 폭력의 위험에 처한 노인을 보호할 것을 권고했다.<sup>38</sup>
27. 정책 차원에서 2002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이 노인 보호를 다루는 주요한 국제 정책으로 남아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을 다루고 있으며 인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무총장은 계획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서 노인 학대가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회원국들이 노인 학대 퇴치에 있어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정도에 있어서 지역 간 및 지역 내

---

<sup>38</sup> Submission from AGE Platform Europe.

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법률과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대응은 실행과 적절한 자원 제공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등 체계적이거나 혁신적이지 않았다.<sup>39</sup>

28. 유엔 건강한 나이듦 10년 계획(the United Nations Decade of Healthy Ageing 2021-2030)은 전 세계적으로 노인 보호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노인 학대를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로 시작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 학대를 연령주의, 고령친화적 환경, 통합 치료 및 장기 요양이라는 4가지 영역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다. 이 10년 계획은 잘 알려진 정책 체계로서, 그 일부로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싸우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각 국가에 제공된다. 그러나 그 영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또한 이 10년 계획은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과 2030 지속발전가능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행을 지원한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노인을 포함한 학대 근절 혹은 감소를 향한 두 가지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목표 5.2 및 16.1).

### **E. 데이터(Data)**

29.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및 방임에 관한 데이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인구통계학적 조사, 건강 조사 그리고 학대에 관한 조

---

<sup>39</sup> [E/CN.5/2023/6](#) and [E/CN.5/2023/6/Corr.1](#), para. 55.



사에서는 노인, 특히 50세 이상의 여성과 55~60세 이상의 남성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노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지표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노인 학대는 보이지 않게 된다.<sup>40</sup>

30. 일반적으로 폭력의 주제에 대한 연령별로 세분화된 데이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sup>41</sup> 추가적인 교차 요인을 고려한 데이터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 노인 학대 발생률에 대한 성별 분리 데이터는 부족하다.<sup>42</sup>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및 강간,<sup>43</sup> 경제적 학대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하다.<sup>44</sup> 또한 노인 남성은 종종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연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노인 남성의 학대의 성격, 규모 및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sup>45</sup>

31. "노인"과 "학대"에 대한 정의와 유형의 다양성, 학대로 간주되는 행위의 빈도에 대한 합의 부족, 연구 기간의 변화(예: 과거 1년, 과거 5년, 65세 이후) 또는 제외 기준(예: 거주지 및 영토와 같은 특정 장소 또는 인지가 부족한 취약한 사람)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유병률을 추정하거나 연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특정 노인 집단이나 특정 환경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의 확산을 과소평가하게 되므로 특히 문제가 된다. 학대 여부에 관계없이 이분법적

---

<sup>40</sup> [A/HRC/45/14](#), paras. 60 and 61; and submissions from AGE Platform Europe, the Caxton Legal Centre and the Violence and Society Centre of the University of London.

<sup>41</sup> Submission from Portugal.

<sup>42</sup> [A/76/157](#), paras. 50 and 51.

<sup>43</sup> See <https://www.ohchr.org/en/statements-and-speeches/2019/06/world-elder-abuse-awareness-day-15-june-2019>; and submission from BAGSO.

<sup>44</sup> See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18/06/world-elder-abuse-awareness-day-15-june-2018>.

<sup>45</sup> Submission from Hourglass.

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경향으로 인해 수집된 데이터의 깊이도 제한된다. 심각도 지수를 추가하면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46</sup> 더욱이 노인은 수치심이나 조롱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폭력 신고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연령주의로 인해 학대 관계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sup>47</sup>

32.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학대나 폭력의 피해자인 노인의 실제 수는 기존 데이터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피해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48</sup>

33. 노인 사망은 항상 정기적으로 조사되거나 사후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해자 관계는 데이터 수집에서 제외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되는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sup>49</sup>

#### IV. 학대의 징후(Manifestations of abuse)

34. 노인 학대는 많은 국가에서 공공보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국가

---

<sup>46</sup> Submission from M. Beaulieu.

<sup>47</sup> Submissions from Portugal, Heléna Herklots and the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Canada; and Older People's Commissioner for Wales, *Improving Support and Services for Older Men Experiencing Domestic Abuse* (2022), p. 28.

<sup>48</sup> See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abuse-of-older-people>.

<sup>49</sup> WHO,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2014* (Geneva, WHO, 2014), p. 13.

의 긴급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한 세계적인 인권 문제이다. 연령주의는 노년기에 악화되는 불평등과 함께 폭력의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행과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35. 노인 학대는 여성이나 아동 등 다른 집단에 대한 폭력만큼 연구되지 않았다. 노인 학대에 관해 알려진 정보 중 대부분은 인구 기반 조사와 특별 연구를 통해 나온 것이다.<sup>50</sup>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의 16%가 폭력, 학대 또는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한다.<sup>51</sup> 노인의 약 11.6%는 심리적 학대, 6.8%는 재정적 학대, 4.2%는 방임, 2.6%는 신체적 학대, 0.9%는 성적 학대의 피해자로 나타난다.<sup>52</sup> 이해관계자들은 노인 피해자들이 종종 복합적이거나 여러 폭력적인 행위에 직면한다고 언급했다.<sup>53</sup> 독립 전문가는 연령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노인 학대의 증가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54</sup> 다양한 형태의 학대는 서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학대의 여러 형태들이 노인의 삶에서 서로 관련되어 드러난다.

#### A.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36. 신체적 학대는 때리기, 밀치기, 구속(화학적 구속 포함), 감금 등의 폭력적

---

<sup>50</sup> Ibid.

<sup>51</sup> See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abuse-of-older-people>.

<sup>52</sup> WHO, *Global Report on Ageism*, p. 54.

<sup>53</sup> Submissions from Estonia and BAGSO.

<sup>54</sup> Submission from AGE Platform Europe; and working paper prepared by OHCHR containing an update to the 2012 analytical outcome study on the normative standard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older persons, para. 9.

행위를 말하며 고의로 신체적 고통과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sup>55</sup> 즉각적인 결과는 타박상, 골절,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고, 두려움, 슬픔, 분노와 같은 정서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sup>56</sup> 독립 전문가는 일부 국가에서 신체적 폭력이 노인 학대의 가장 흔한 유형이며 나이가 들수록 그 빈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sup>57</sup>

37.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노인에게 가해진 신체 상해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sup>58</sup> 신체적 학대는 가족, 개인, 공공 및 기관 환경에서 노인을 위한 모든 형태의 생활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의 희생자가 될 위험성은 기관 환경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sup>59</sup> 인적 자원 부족과 노인 차별적 제도적 관행은 또한 신체적 및 화학적 제약을 적용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절망을 증가시킬 수 있다.<sup>60</sup> 치매의 경우 화학적 억제 수단으로 진정제나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력 부족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의학적 이유 없이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반에 해당한다.<sup>61</sup>

---

<sup>55</sup> See <https://www.helpage.org/silo/files/elder-abuse-what-is-it.pdf>.

<sup>56</sup>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European Report on Preventing Elder Maltreatment* (Copenhagen, 2011), p. 25.

<sup>57</sup> Submission from Estonia.

<sup>58</sup> Submission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of Brazil; and see <https://unsdg.un.org/sites/default/files/2020-05/Policy-Brief-The-Impact-of-COVID-19-on-Older-Persons.pdf>.

<sup>59</sup> [A/76/157](#), para. 55.

<sup>60</sup> Yongjie Yon and others,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in institutional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29, No. 1 (February 2019); and submissions from Keyword, Pritchard-Jones, Flynn and Griffiths, and Sage Advocacy.

<sup>61</sup> [A/HRC/44/48](#), para. 48.

38. 많은 나이든 여성들이 일생 동안 파트너, 전 파트너 또는 가족의 손에 의해 가정 폭력을 당해왔다.<sup>62</sup>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권력 및 통제 역학은 나이 및 새로운 연령 관련 불평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돌봄 관련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다.<sup>63</sup> 예를 들어 나이든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별거로 인한 사회적 결과를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는 두려움 때문에 젊은 여성에 비해 폭력적인 파트너와 별거하거나 고발할 가능성이 적다.<sup>64</sup> 나이든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은 성폭력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폭력이 계속해서 무시되고 있다.<sup>65</sup>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에서 나이든 여성에 대한 살인율과 유해한 관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sup>66</sup>
39. 일부 사회에서는 노인 여성, 특히 미혼이거나 사별한 여성이 유기, 재산 강탈, 성폭력, 강제 결혼 또는 미신으로 인한 비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다.<sup>67</sup> 이러한 폭력 행위는 관습과 전통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sup>68</sup> 미신적 비난은 종종 불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이 어려운 시기에 무방비 상태이거나 사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일이 어떻게 개인에게 발생했는지가

---

<sup>62</sup> Submission from Argentina.

<sup>63</sup> [A/76/157](#), para. 52.

<sup>64</sup> Submission from BAGSO.

<sup>65</sup> See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2/06/un-experts-urge-states-address-violence-abuse-and-neglect-older-women>.

<sup>66</sup> Submissions from Argentina, the Femicide Observation Center Germany and Hannah Bows.

<sup>67</sup> See [A/70/185](#).

<sup>68</sup> [A/HRC/23/49/Add.2](#), paras. 31–40 and 64–66; [A/HRC/17/26/Add.3](#), para. 64; [A/HRC/17/26/Add.4](#); and [A/HRC/11/6](#).

아니라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한다.<sup>69</sup> HIV 및 치매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제한된 이해는 가족 내에서 귀신에 쓰였다는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상속권이 거부될 수 있는 과부를 표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비난은 종종 개인적인 질투나 토지 분쟁, 그리고 취약하고 나이든 여성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전통적인 치료사의 개입으로 인해 부추겨질 수 있다.<sup>70</sup>

### **B. 심리적 및 정서적 학대(Psychological and emotional abuse)**

40. 심리적 및 정서적 학대는 노인 학대의 가장 흔한 형태이며<sup>71</sup> 노인 남성과 노인 여성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sup>72</sup> 심리적 및 정서적 학대에는 헐박, 굴욕, 일상적인 비난, 폭언, 모욕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노인을 친구나 활동으로부터 격리시켜 그들의 정체성, 존엄성 및 자존감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정서적 학대는 친척이나 보호자가 치매에 걸린 노인을 대하는 방법을 모를 때 촉발될 수 있다. 독립 전문가는 전 세계의 많은 노인이 사회 활동 중에 모욕과 조롱을 포함한 거부와 부정적인 대우를 경험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는 정보를 얻었다. 이는 자존감을 감소시키고 건강 문제를 증가시킨다. 이

---

<sup>69</sup> HelpAge International, "Using the law to tackle accusations of witchcraft: HelpAge International's position" (London, 2011), p. 5.

<sup>70</sup> HelpAge International, "Violence against older women: tackling witchcraft accusations in Tanzania" (2011), p. 1.

<sup>71</sup> Submissions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of Ireland and Mexico and the Castan Centre for Human Rights Law. See also [A/HRC/42/43/Add.1](#), para. 31.

<sup>72</sup> Submission from Malta.

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을 향한 정서적 학대가 만연해 있으며, 이는 노인의 안녕과 사회적 상호 작용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41. 의사결정권을 제거하는 것도 개인의 자존감을 감소시킨다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노인의 동의 없이 거주 요양 양식에 서명하거나 부동산 매매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타인의 방문 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하는 경우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sup>73</sup>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한 노인 트랜스젠더는 치료 거부, 심리적 학대, 동의 없는 커밍아웃, 성 정체성에 맞는 옷차림 금지 등의 학대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를 기피하게 된다.<sup>74</sup>

### C. 성적 학대(Sexual abuse)

42.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는 성희롱, 성행위 또는 동의 없이 행해진 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며, 노인에게 성행위를 보게 하거나 옷을 벗도록 강요하는 것도 포함된다. 수년간 연구에서는 노인, 특히 노인 여성을 그러한 폭력의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했다. 학대하는 사람은 가까운 파트너, 간병인 또는 심지어 낯선 사람일 수도 있다.<sup>75</sup>

---

<sup>73</sup> Submission from Sage Advocacy.

<sup>74</sup> [A/74/181](#), para. 47; and Keck School of Medicine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 others, "Research brief: mistreatment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elders" (United States of America,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2021), p. 3.

<sup>75</sup> See [https://www.un.org/development/desa/ageing/wp-content/uploads/sites/24/2021/02/Ruthy-Lowenstein\\_paper.pdf](https://www.un.org/development/desa/ageing/wp-content/uploads/sites/24/2021/02/Ruthy-Lowenstein_paper.pdf).

43. 노인에 대한 성폭력은 시설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만연한다.<sup>76</sup> 성폭력을 경험하는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남성 피해자의 비율보다 높으며, 시설 거주자의 대다수는 노인 여성이다.<sup>77</sup> 요양원 환경 내 거주자 간 성적 학대 사례도 보고되었다.<sup>78</sup>
44. 노년기 성폭력은 노인 학대의 유형 중 가장 적게 보고되는 이슈일 뿐만 아니라 기록된 자료도 가장 적다.<sup>79</sup> 세분화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sup>80</sup> 데이터 수집 부족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노인의 성적 취향을 무시하는 사회적 태도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특히 노인이 요양원 내에서 성폭행을 신고하는 것을 방해한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연민이나 수치심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정적인 증거의 상실로 이어진다.<sup>81</sup> 성적 학대 피해자를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체적 징후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sup>82</sup> 노인에게 치매와 같은 인지적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경우 더욱 악화될 수 있다.
45. 일부 연구에 따르면 노인 성적 학대 피해자는 신체적 부상, 수면 장애, 우

---

<sup>76</sup> Ibid.

<sup>77</sup> [A/76/157](#), para. 55.

<sup>78</sup> Submission from Sage Advocacy.

<sup>79</sup> Ibid.

<sup>80</sup> [A/76/157](#), para. 51.

<sup>81</sup> See <https://www.ohchr.org/en/statements-and-speeches/2019/06/world-elder-abuse-awareness-day-15-june-2019>; and Ruthy Lowenstein Lazar, "Me too? The invisible older victims of sexual violence", *Michigan Journal of Gender & Law*, vol. 26, No. 2 (2020), pp. 269 and 270.

<sup>82</sup> Submission from Albania.



울증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과 대처 전략에 대한 종단적 연구는 아직 없다.<sup>83</sup>

#### D. 재정적 및 물질적 학대(Financial and material abuse)

46. 재정적 학대에는 다른 사람의 자금, 자산 또는 재산을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노인 학대의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다. 이는 절도, 사기, 위조, 재산 남용, 위임장 남용, 자금 접근 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sup>84</sup> 치매 노인을 포함한 노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재산을 양도하게 될 수도 있다. 일부 사회에서는 주술 혐의, 재산 몰수, 퇴거, 과부의 상속권 거부 등을 중심으로 재정적 학대가 발생한다.<sup>85</sup> 노인 보조금, 수당 및 연금의 오용도 재정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sup>86</sup> 온라인 बैं킹, 모바일 통장과 같은 신기술로 인해 노인은 학대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금융 착취 가해자는 노인 사용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온라인 방법을 사용했으며 온라인 사기 신고가 전화 사기 신고를 초과했다. 재정적 학대는 노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인은 손실을 회복할 수 없어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sup>87</sup> 예를 들

---

<sup>83</sup> Hannah Bows, "Sexual violence against older people: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vol. 19, No. 5 (2018).

<sup>84</sup> Yon Yongjie and others, "Elder abuse prevalence in community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Lancet Global Health*, vol. 5, No. 2 (February 2017), p. e147.

<sup>85</sup> See <https://social.desa.un.org/sdn/understand-and-end-financial-abuse-of-older-people>.

<sup>86</sup> [A/HRC/36/48/Add.2](#), para. 34; [A/HRC/54/26/Add.1](#), para. 31; and [A/HRC/54/26/Add.2](#), para. 37.

<sup>87</sup> Tianyi Zhang and others, "Elder financial exploitation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vol. 51, No. 2 (June 2023), p. 2.

어 미국에서는 이로 인해 연간 약 365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sup>88</sup>

47. 재정적 학대가 만연하고 있지만 과소 신고로 인해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sup>89</sup> 과소 신고는 피해자의 수치심과 당혹감, 인지 장애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한 신고 불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sup>90</sup> 피해의 위험 요소로는 사회적 고립, 인지적 장애, 가해자에 대한 의존, 재정적 의존, 특정 생활 방식, 빈곤, 미망인, 지원 네트워크 부족, 연령 차별, 차별적 상속 제도 및 약한 법 집행 등이 있다.<sup>91</sup>

#### E. 방임(Neglect)

48. 방임은 노인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sup>92</sup> 방임의 특성과 증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고가 적고 그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도 적다. 이는 음식, 물, 주거, 의복, 또는 일상 생활 작업 및 간병 지원에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배제로 나타난다. 방임은 공식적 및 비공식적 보호자, 가족, 친구, 이웃으로 구성된 사회적 환경에서 노인에게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 관심, 물질적 재화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

<sup>88</sup> See <https://www.ncoa.org/article/get-the-facts-on-elder-abuse>.

<sup>89</sup> See <https://www.un.org/sw/desa/financial-abuse-elderly-%E2%80%98rampant-invisible%E2%80%99-says-un-expert>.

<sup>90</sup> See [https://www.un.org/development/desa/ageing/wp-content/uploads/sites/24/2017/05/WEAAD2017\\_MissionStatement\\_Final.pdf](https://www.un.org/development/desa/ageing/wp-content/uploads/sites/24/2017/05/WEAAD2017_MissionStatement_Final.pdf).

<sup>91</sup> See <https://social.desa.un.org/sdn/understand-and-end-financial-abuse-of-older-people>; and submission from th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 and the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sup>92</sup> Submission from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부족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93</sup>

49. 돌봄을 제공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경우, 관계 갈등,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 다중 돌봄 책임(예: 어린 자녀) 및 돌봄 제공자가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포함한 여러 요인들이 방임을 초래할 수 있다.<sup>94</sup> 친척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과 가족 구조의 붕괴 또한 노인에 대한 방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sup>95</sup>
50. 방임은 영양실조, 위생 관련 건강 문제, 어떤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노인에게 필수 약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sup>96</sup> 노인은 가정 및 기관 환경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돌봄 환경에서 방치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이동 제한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기간보다 방임 사례가 더 많아졌고, 이로 인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더 심해졌다.<sup>97</sup>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기관 및 요양 시설에서 노인을 방임하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 국제적인 항의가 촉발되었다.<sup>98</sup>

---

<sup>93</sup> Submissions from AGE Platform Europe and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sup>94</sup> Robert Kohn and Wendy Verhoek-Oftedahl, "Caregiving and elder abuse", *Medicine & Health Rhode Island*, vol. 94, No. 2 (February 2011).

<sup>95</sup> Submission from Albania.

<sup>96</sup> See <https://elderabuse.org/elder-neglect/>.

<sup>97</sup> Raudah Mohd Yunus, Nik Nairan Abdullah, and Muhammad Abbas M. Firdaus, "Elder abuse and neglect in the midst of COVID-19", *Journal of Global Health*, vol. 11 (2021).

<sup>98</sup> [A/75/205](#), para. 51. See also <https://unsdg.un.org/sites/default/files/2020-05/Policy-Brief-The-Impact-of-COVID-19-on-Older-Persons.pdf>; and <https://social.desa.un.org/issues/ageing/news/unacceptable-un-expert-urges-better-protection-of->

51. 노인이 지역사회 지원과 돌봄 서비스로 인해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방임(Self-neglect)이 발생할 수 있다.<sup>99</sup>

#### F. 노인 혐오 발언(Hate speech against older persons)

52. 연령주의에 뿌리를 둔 노인에 대한 혐오 발언은 노인 개개인이 차별에 직면할 때 발생한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경멸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는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며, 폭력, 학대 및 방임까지 초래한다.<sup>100</sup>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제한적 조치와 사회경제적 영향에 반하여 노인에 대한 공공연령주의(public ageism)가 발생했다.<sup>101</sup> 미디어, 온라인 및 정치 담론을 통해 혐오스럽고 비인간적인 언어 및 수사적 표현이 널리 퍼졌다. 이는 노인에 대한 혐오 발언 및 증오 범죄의 증가로도 나타났다.<sup>102</sup> 노인이 경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젊은 세대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게시물 및 미디어 기사에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 해시태그가 사용되었다. 이는 명백히 노인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다.<sup>103</sup>

---

older-persons-facing-the.

<sup>99</sup> Submission from Albania.

<sup>100</sup> [A/76/156](#), para. 36.

<sup>101</sup> Bronwen Lichtenstein, “From ‘coffin dodger’ to ‘boomer remover’: Outbreaks of ageism in three countries with divergent approaches to coronavirus control”,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vol. 76, No. 4 (April 2021).

<sup>102</sup> Submission from AGE Platform Europe.

<sup>103</sup> [A/76/156](#), para. 36.

## G. 특수 상황(Specific contexts)

53. 노인은 일반적으로 가장 늦게 대피하고 분쟁 지역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력 충돌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 이들은 법적 구속력을 넘어서는 살인, 구타, 임의 체포, 정신적 피해, 트라우마, 약탈 및 사유 재산 파괴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 여성은 성희롱과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된다. 노인은 이주하는 기간 동안 대피소, 의료 센터, 그들의 특별한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부족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한다. 어떤 경우에는 노인들이 짐으로 여겨져 친척들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도 있다.<sup>104</sup> 이로 인해 이들이 폭력과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up>105</sup>
54. 자연재해로 인해 노인은 안전 문제 및 지원 중단과 같은 심각한 보호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노인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응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sup>106</sup> 자연재해 도중과 그 이후에 폭력, 학대 및 방임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차별과 사회적 낙인은 재난 발생 시 성별 기반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식량, 물, 위생, 주거, 의료용품 및 의료 서비스 등 필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실향민 노인, 특히 정신 건강 문

---

<sup>104</sup> Submission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of Ethiopia; OHCHR, “Briefing paper: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older persons in Ukraine in the context of the armed attack by the Russian Federation” (May 2023); and *Neglect, Abuse and Violence against Older Women*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3).

<sup>105</sup> Submission from Peru.

<sup>106</sup> [E/CN.5/2023/6](#) and [E/CN.5/2023/6/Corr.1](#), paras. 27–30.

제가 있는 노인은 학대를 당할 위험이 더 높다.<sup>107</sup>

55. 자유를 박탈당한 노인은 형사사법제도나 이민 관련 환경 등에서 학대와 폭력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과도한 형량, 초만원된 교도소, 노인의 필요에 대한 직원 교육 부족, 부족하고 부적절한 식량, 의료 및 지원의 부족, 그리고 석방 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부족 등은 학대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 중 일부이다.<sup>108</sup>

## V. 노인에 대한 폭력 및 학대, 방임 문제 해결(Addressing violence against and abuse and neglect of older persons)

56. 가정폭력과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방지하는 전략에서 얻은 교훈은 예방이 노인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sup>109</sup> 폭력 예방은 평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57.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는 (a) 입법 및 정책 개입, (b)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예방 프로그램, (c) 연령에 적합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d) 법 집행 기관의 대응 및 사법적 접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A. 학대 방지 및 보호(Prevention and protection against abuse)

#### 1. 국가적 법률(National legislation)

<sup>107</sup> [A/78/226](#), paras. 23, 29 and 59.

<sup>108</sup> [A/HRC/51/27](#), paras. 41–47.

<sup>109</sup> See <https://www.unwomen.org/en/what-we-do/ending-violence-against-women>.

58. 노인 학대라는 재앙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법안은 노인에 대한 허용 가능한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의 규범 확립, 생존자에게 법적 보호 제공, 모든 관련 행위자의 대응에 대한 조정, 이러한 형태의 학대 가해자에 대한 제재 제공 등에 대한 법률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또한 모든 폭력 예방 정책 또는 계획의 핵심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sup>110</sup>
59. 헌법상 노인 학대에 관한 독립 조항은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을 보장한다.<sup>111</sup> 소수의 국가만이 노년기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성문화했으며, 186개 국가의 헌법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노인에게도 적용된다.<sup>112</sup>
60. 노인이 경험하는 폭력, 학대 및 방임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에 비해 국가적인 법률 체계 안에서 제한된 관심을 받아 왔다. 2014년 133개 보고 국가 중 59%가 노인 학대를 다루는 구체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sup>113</sup> 기관 내 노인 학대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40%였다.<sup>114</sup>
61. 몇몇 국가에서는 학대 방지를 위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노인의 권리에

---

<sup>110</sup> WHO, UNODC and UNDP,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2014*, p. 38.

<sup>111</sup> Submissions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of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and Kenya.

<sup>112</sup> See <https://constitutions.unwomen.org/en/dashboard> (accessed 2 August 2023).

<sup>113</sup> WHO, UNODC and UNDP,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2014*, p. 39. For examples, see [A/HRC/45/14/Add.1](#), para. 28; and submission from th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 and the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sup>114</sup> WHO, UNODC and UNDP,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2014*, p. 39; and submissions from Albania, Armenia, Australia and El Salvador.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했다.<sup>115</sup> 이러한 법률 중 일부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형사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sup>116</sup> 일부 법률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소 및 처벌 조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sup>117</sup>

62. 폭력과 범죄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 입법이 광범위하게 제정되고 시행되어 표면적으로는 노년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에는 80%의 국가가 폭력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었지만 57%의 국가만이 그 법률이 완전히 시행되었다고 보고했다.<sup>118</sup> 그러나 연령에 대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인 보호 체계가 흔들린다.<sup>119</sup> 또한 일부 국가에는 차별 금지 법안이 있을 수 있지만, 연령에 기초한 교차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sup>120</sup> 최소 155개국에 가정 폭력에 관한 법률이 있다.<sup>121</sup> 이러한 법률에는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의무에도 불구하고 연령을 학대의 근본 원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up>122</sup>

---

<sup>115</sup> Dominican Republic, Law No. 352-98 on Protection of the Ageing Person; [A/HRC/45/14/Add.1](#), para. 28; [A/HRC/54/26/Add.3](#), para. 30; and submissions from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and Brazil.

<sup>116</sup> Submission from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sup>117</sup> [A/HRC/54/26/Add.3](#), para. 11.

<sup>118</sup> WHO, UNODC and UNDP,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2014*, p. ix.

<sup>119</sup> Submissions from Albania, Estonia, Ireland, Lebanon, Luxembourg, Saudi Arabia, Seychelles and Slovenia.

<sup>120</sup> Submissions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of Brazil, Ethiopia and Mexico, and Wenck K. Malmedal.

<sup>121</sup> According to World Bank data, 85 per cent of countries have such legislation (World Bank Group,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23* (Washington, D.C., 2023), p. 29).

<sup>122</sup>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27 (2010), para. 37.



63. 일부 국가에서는 형법이나<sup>123</sup> 가정폭력법에 연령을 언급하거나 노년의 가족 구성원을 학대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도입했다.<sup>124</sup>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노인 여성은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에서 종종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25</sup> 새로운 접근 방식에는 혐오 범죄 관련 조항에 연령을 언급하는 것이 포함된다.<sup>126</sup>
64. 일부 국가에서는 노인 학대를 금지하고 그러한 폭력 행위를 어느 정도 범죄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의 집행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30%).<sup>127</sup>

## 2.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65. 노인 학대에 대한 또 다른 예방 조치는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국가는 데이터에 의한 정보를 통해 학대의 근본 원인과 학대가 노인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숙고하도록 만드는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에는 목표, 우선순위, 할당된 책임, 일정 및 평가 메커니즘, 그리고 실행을 위한 적절한 재정 등을 명확하게 계획하는 것을 내포한다.<sup>128</sup> 또한 국가 계획이나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노인 학대와의 전쟁을 우선시하겠다는 국가의

---

<sup>123</sup> Submissions from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Colombia, Israel, Portugal, the Russian Federation and Türkiye.

<sup>124</sup> [A/HRC/39/50/Add.1](#), para. 32; and submissions from Albania, Chile, Colombia, Cyprus, Ireland, Poland and Tunisia.

<sup>125</sup> [A/HRC/45/14](#), para. 63.

<sup>126</sup> Submission from Hannah Bows.

<sup>127</sup> WHO, UNODC and UNDP,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2014*, p. 39.

<sup>128</sup> *Ibid.*, p. 24.

의지를 보여준다.

66. 2014년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 약 41%가 노인 학대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sup>129</sup> 일부 국가는 주로 돌봄 기관 및 시설 환경에 초점을 맞춘 국가 실행 계획이나 정책을 채택했거나, 이러한 것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sup>130</sup> 일부 국가에서는 미신 관련 범죄 등 노인에 대한 특정 유형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채택되었다.<sup>131</sup> 또한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국가 정책 및 전략 내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다.<sup>132</sup>
67. 더욱이,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나<sup>133</sup>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채택했는데,<sup>134</sup> 여기에는 노인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가 암묵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연령과 노인의 현실의 삶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은 거의 없다.
68.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를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 행동 계획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를 국가의 우선순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재정, 역량 및 인적) 부족이 이행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따라서 국가 계획이 부분적으로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노인들이 학대와 차별에 취약해질 수

---

<sup>129</sup> Ibid.; and submission from Australia.

<sup>130</sup> Submissions from Armenia, Australia and Luxembourg.

<sup>131</sup> Submission from HelpAg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sup>132</sup> Submissions from Colombia, Lebanon, Malta, the Russian Federation and Seychelle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of Brazil.

<sup>133</sup> Submission from Portugal.

<sup>134</sup> Submission from Saudi Arabia.

있다.<sup>135</sup>

### 3. 모니터링 실행(Monitoring practices)

69. 치료의 질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예방 및 양질의 서비스 보험 메커니즘을 통해 시설 내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학대 및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방임, 학대 및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자유 박탈(deprivation of liberty)을 야기하는 여러 형태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 요양 및 건강 관련 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sup>136</sup> 독립 전문가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자유를 박탈하는 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은 특히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전략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예고 없이 방문을 수행하고 노인의 생활 상태를 조사하며 노인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sup>137</sup>

### 4. 예방 프로그램(Prevention programmes)

70. 노인학대 예방대책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총회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 학대와 고통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지정했다. 이 날과

---

<sup>135</sup> Submission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of Ethiopia. See also [A/HRC/54/26/Add.2](#), paras. 12 and 13.

<sup>136</sup> Submission from the Castan Centre for Human Rights Law.

<sup>137</sup> [A/HRC/51/27](#), paras. 77 and 78; and submission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of Türkiye.

세계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 10월 1일)에는 시민단체가 (때로는 국가와 협력하여) 학대의 위험 요인 및 대응 방법을 포함하여 학대의 형태와 그 결과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노인과 젊은 세대 사이의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을 촉발하는 세대 간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programmes)은 두 그룹 모두의 자존감과 웰빙을 높여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sup>138</sup>

71.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보고된 주요 전략 중 하나는 돌봄 제공자 지원 프로그램이다.<sup>139</sup>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장기 간병 및 지원을 제공하지만, 과중한 부담과 우울감에 빠져있는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돌봄 제공자의 공급이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식 장기 돌봄 제공자는 1,3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sup>140</sup> 유급 및 무급, 공식 및 비공식 부문의 돌봄 제공자 대부분은 여성이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을 병행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열악한 진료와 폭력 및 학대가 발생한다. 돌봄 제공자는 종종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sup>141</sup>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훈련은 공식 및 비공식 돌봄 제공자 모두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학대 상황을 인식 및 방지하는 데 도움이

---

<sup>138</sup> See, for example, <https://www2.gov.bc.ca/gov/content/family-social-supports/seniors/health-safety/active-aging/intergenerational-connections>; and submission from Australia.

<sup>139</sup> WHO, UNODC and UNDP,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2014*, p. 31.

<sup>140</sup> See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spd/2022/11/caregiving-ageing-world/>.

<sup>141</sup> WHO, *Framework for Countries to Achieve an Integrated Continuum of Long-Term Care* (Geneva, 2021), p. 24. See also [A/HRC/54/26/Add.1](#), para. 36; and submission from Qatar.

될 수 있다.<sup>142</sup> 133개 국가 중 약 36%만이 주거형 요양원 내 치료 표준을 개선하고 노인 학대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했다.<sup>143</sup>

72. 일부 금융 서비스 기관과 은행은 노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학대의 징후를 파악하고, 이러한 경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sup>144</sup> 실제로 금융기관은 그들의 서비스나 행동이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경우 인권에 대한 책임을 진다.<sup>145</sup>

## 5.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

73. 노인 학대 확산에 관한 데이터 부족은 인권 침해 예방에 큰 장벽이 된다.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은 폭력 패턴, 학대 신고 방법, 그리고 생존자를 위한 기존 지원 및 구제 접근 등에 대해 귀중하고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sup>146</sup> 이러한 귀중한 정보는 예방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노인 학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어진다. 노인 학대에 관한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는 것은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최우선 조치가 되어야 한다.

74. 2014년 133개 국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 학대에 관한 데이터를 수

---

<sup>142</sup>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Abuse of older persons", p. 1.

<sup>143</sup> WHO, UNODC and UNDP,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2014*, p. 31.

<sup>144</sup> See, for example, [https://www.afca.org.au/sites/default/files/2019-12/afca\\_approach\\_-\\_financial\\_elder\\_abuse.pdf](https://www.afca.org.au/sites/default/files/2019-12/afca_approach_-_financial_elder_abuse.pdf); and <https://www.aba.com/advocacy/community-programs/consumer-resources/protect-your-money/elderly-financial-abuse>.

<sup>145</sup> See <https://www.ohchr.org/en/special-procedures/wg-business/financial-sector-and-human-rights>.

<sup>146</sup> [A/HRC/45/14](#), para. 63.

집한 국가는 17%에 불과했다.<sup>147</sup> 소수의 국가에서는 국가 통계 기관 등을 통해 학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에 대해 독립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보고했다.<sup>148</sup>

75. 노인 학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도움 요청이나 학대 보고를 식별하는 모든 행위자가 학대의 징후와 증거를 효과적으로 인식하도록 훈련될 때 향상된다.<sup>149</sup>

#### 6. 노인 학대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 가용성(Availability of services for older survivors of abuse)

76. 양질의 다부문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노인의 안전, 보호 및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133개 국가 중 단 3분의 1만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성인 보호 서비스가 있다고 보고했다.<sup>150</sup>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체는 아동 보호 서비스 및 젠더 기반 및 성폭력에 대한 의료 법률 서비스에 비해 노인과 관련된 문제에 덜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51</sup> 노년기 학대 피해자는 가정 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시행된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의 특정 요구 사항(특히 여성 노인)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sup>152</sup>

<sup>147</sup> WHO, UNODC and UNDP,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2014*, p. 23.

<sup>148</sup> [A/HRC/54/26/Add.1](#), para. 21; and submissions from Australia,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El Salvador, Estonia, Ireland, Lebanon, Malta, Mexico, Seychelles and Türkiye.

<sup>149</sup> Submission from M. Beaulieu.

<sup>150</sup> WHO, UNODC and UNDP,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2014*, p. 41.

<sup>151</sup> Ibid.

<sup>152</sup> Lori E. Weeks and others, "Initiatives to support older women who experience intimate partner

77. 학대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정한 노인에게는 특히 안전한 주택을 찾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가정 폭력을 견딘 노인을 위한 긴급 대피소와 단기 지원 숙소의 이용은 증가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환경은 더 개인적이고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 확보와 약물 치료 지원을 포함하여 여성 노인의 필요를 더 잘 수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78. 또한 연구는 가정 폭력을 당한 노인 여성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에 맞서 싸우고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며 생존 전략을 배우기 위해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회복에 좋은 결과가 있음을 나타낸다.<sup>153</sup>
79. 국가 헬프라인(National helplines)은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관련 전문가와 연결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여러 국가에서는 노인을 포함하여 학대를 신고하기 위한 전용 핫라인을 설치했으며,<sup>154</sup> 일부 국가에서는 법집행을 통해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sup>155</sup>
80.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 조치는 일반적으로 보건 부문, 형사 사법 제도, 사회 복지 서비스, 시민 사회 등에서 여러 행위자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조치가 분절화 될 수 있다.<sup>156</sup> 국가 통계 기관과의 협력은 학대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모든 관련 행위자의 더 나은 대응과 조율된 조치를 촉진하기

---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vol. 27, Nos. 15–16 (December 2021).

<sup>153</sup> Ibid.

<sup>154</sup> Submissions from Argentina, Australia, Chile, Estonia, Israel, Portugal, Qatar, Seychelles, Tunisia and Türkiye, and Wench K. Malmedal.

<sup>155</sup> [A/HRC/54/26/Add.1](#), para. 35.

<sup>156</sup> WHO, UNODC and UNDP,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2014*, p. 26.

위해서는 경찰관, 검사, 변호사, 공증인, 판사, 심리상담사 및 금융계 구성원 등과 같은 행위자들을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이 중요하고, 이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데 핵심이 된다.<sup>157</sup> 시민사회, 종교단체, 지역사회 지도자들 역시 지역사회 내 노인 피해자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158</sup>

## **B.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Access to justice)**

81.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은 노인 학대를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의 권리에 대한 포괄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위한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국제적 틀은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사법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159</sup> 유엔 노인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의 열 두 번째 원칙은 돌봄의 맥락 내에서 노인에게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지역 차원에서 법적 장치는 학대를 받은 노인이 사법제도에 접근할 권리 또한 보장한다.<sup>160</sup>
82. 노인 생존자들은 법적 수단을 모색할 때 주거에 대한 접근성, 가용성, 적

---

<sup>157</sup> Submissions from Australia and Peru, the Older People's Commissioner for Wale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of Argentina and Ethiopia.

<sup>158</sup> Submission from Ireland.

<sup>159</sup>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8;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s. 14, 16, 17 and 26; an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s. 12 and 13.

<sup>160</sup> 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in Africa, art. 4; Inter-American Convention o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rt. 31;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t. 47; and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s. 6 and 13.



합성 부족, 사법 절차 지연, 디지털 격차, 문화적 규범, 성 편견, 차별, 연령주의 등과 같은 장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sup>161</sup>

83. 코로나19 팬데믹은 특히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법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노인은 격리, 봉쇄 및 불안정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사법제도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sup>162</sup> 팬데믹 기간 동안 구제책을 찾는 데 직면한 어려움은 사법제도 및 효과적인 구제방안에 대한 접근을 방해했다.<sup>163</sup>

84. 성폭력을 경험한 고령의 여성 장애인은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고 법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그들의 이야기가 은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노인 여성, 특히 인지 장애가 있는 여성이 학대를 신고할 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신뢰성을 과소평가하고, 그들을 증인으로 보지 않는 회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sup>164</sup>

85.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에 대한 법적 지원 및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법 제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유의미한 계획을 도입했다.<sup>165</sup> 몇몇 국가에서는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sup>166</sup> 노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불만 사항

---

<sup>161</sup> See <https://media.un.org/en/asset/k1w/k1wjcou8tn>.

<sup>162</sup> [A/75/205](#), paras. 67–72.

<sup>163</sup> See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1/06/covid-19-violence-and-neglect-increases-older-persons-during-lockdown-says#:~:text=Lockdown%20measures%20resulted%20in%20increases,with%20family%20members%20and%20caregivers.>

<sup>164</sup> [A/74/186](#), para. 37.

<sup>165</sup> Submissions from Israel, Peru, Portugal and Türkiye, the Dewis Choice Initiative and the Aged Rights Advocacy Service.

<sup>166</sup> Submissions from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Chile and Estonia.

을 접수하고 보호 절차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도 확립되었다.<sup>167</sup> 국가 인권 기관이나 평등 기구를 통해 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국가들도 있다.<sup>168</sup> 학대 발생 시 생존자 중심의 구제책과 배상을 제공하는 보다 포용적이고 연령에 민감한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 및 법 집행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 VI. 결론 및 권고사항(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86. 코로나19 팬데믹, 무력충돌 및 기후변화 등의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노인 에 대한 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정치 및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이고, 전 세계적 대응이 미약해졌다. 데이터가 부족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노인 에 대한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이루기 쉽지 않다.

87. 예방 및 보호 조치의 산발적인 이행과 노인 학대에 대한 조율되지 않은 대응으로 인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개입 평가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sup>169</sup> 국가는 효과적인 예방 및 보호 조치를 통해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특히 이는 유엔 건강

<sup>167</sup> Submissions from Argentina, Australia, El Salvador, Estonia, Malta and Mexico.

<sup>168</sup> Submissions from Albania,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Colombia, Luxembourg, Slovenia and Türkiye.

<sup>169</sup> Christopher Mikton and others, "High time for an intervention accelerator to prevent abuse of older people", *Nature Aging*, vol. 2, No. 11 (November 2022).

한 나이들 10년 계획(the United Nations Decade of Healthy Ageing 2021-2030) 과 노인 인권에 대한 국가의 국제 인권 의무와 궤를 같이 해야 한다 포함된다.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이의 주요 원인이자 장벽인 연령주의를 우선순위로 인정하고 다루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할당해야 한다.<sup>170</sup>

88. 현재의 국제 인권 틀은 노인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폭력,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다양한 근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국제법에서 노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적 보호 체제는 국가가 노년기에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노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과 지침이 될 것이다.

#### **A.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s to States)**

89. 국가는 노년기 폭력,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권리를 다루는 노인 인권에 관해 포괄적이고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채택해야 한다. 노인 학대의 근원이 되는 연령주의와 연령 차별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장치는 노인의 인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이러한 문서의 초안에는 노인의 다양성, 노인을 위한 대표 기관, 시민 사회 단체 및 국가 인권 기관의 의미 있는 참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

<sup>170</sup> Ibid.; and WHO, "Tackling abuse of older people: five priorities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of Healthy Ageing (2021–2030)" (Geneva, 2022).

90. 국가는 노인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폭력, 학대 및 방임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를 포함하는 지역 협약 및 의정서를 비준하고 이행해야 한다.
91. 국가는 현행 인권 체계를 더욱 잘 이행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다양한 이슈를 전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에 노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법률 및 정책적 틀(Law and policy frameworks)**

92. 폭력, 학대 및 방임에 관한 법과 정책은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포함한 인권과 일치해야 하며, 비동질적인 집단인 노인들의 특별한 요구, 특히 노년기의 불평등 증가와 위험 증가를 초래하는 교차 및 누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93. 국가는 연령 차별이 다른 형태의 차별과 동일한 조사 기준을 받도록 보장하는 연령 기반의 국가 차별 금지법을 발의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은 직접적, 간접적, 구조적 차별과 적절한 편의 거부 등을 포함하는 차별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이주 또는 이주 상태, 원주민 지위,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다중적이고 누적적이며 교차적인 차별을 다루어야 한다.

### **2. 근본 원인으로서는 연령주의(Ageism as a root cause)**

94. 독립 전문가는 연령주의 및 연령 차별에 대해 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을 재확인하고자 한다.<sup>171</sup> 이 권고사항은 모든 형태의 노인 학대 퇴치 측면에서

---

<sup>171</sup> [A/HRC/48/53](#).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다.

### 3. 데이터(Data)

95. 독립 전문가는 노인이 겪고 있는 현재의 데이터 격차, 그 원인과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임자가 권고한 사항을 재확인하고자 한다.<sup>172</sup>
96. 국가는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및 방임의 만연한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 방법론과 프로토콜은 노인의 다양성을 통합해야 하며, 5년 그룹별 가용 데이터의 생성과 세분화를 촉진해야 한다.
97. 국가는 사회 내 노인에 대한 폭력의 정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명확한 평가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 사항과 비용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학대와 그 격차에 대한 부문별 대응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구축 및 교육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프로그램 평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새롭고 개선된 법적 및 정책 조치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98. 다양한 환경에서 노인 여성의 상황을 강조하고, 정책을 알리며, 적합한 예방적 개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성별 기반 학대에 관한 데이터 수집에 노인에

---

<sup>172</sup> [A/HRC/45/14](#).

대한 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4. 노인 학대의 징후(Manifestation of abuse of older persons)**

99. 국가는 모든 다른 형태의 폭력을 다루어야 하며, 낙인과 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구조적 및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교차된 형태에 기반한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노인 학대 피해자는 발견하기 어렵고 다루기 복잡한 언어적, 심리적, 정서적, 재정적, 신체적 폭력이 결합된 형태로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100. 국가는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학대 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에게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및 방임은 공공 및 사적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
101. 국가는 노인에게 대한 혐오 범죄를 조장하는 경멸적이고 비인간적인 발언을 혐오 발언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회사, 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언론 매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나타나는 연령주의를 퇴치하기 위해 전념해야 한다.

#### **5. 예방 및 보호(Prevention and protection)**

102. 국가는 사회에서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서 생애주기 접근법을 갖춘 학대 예방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103. 국가는 노인에게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성

적 학대 및 방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합적 및 교차적 요소와 추가적인 구조적 요인을 인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종합적인 입법을 채택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법률을 완전히 시행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04. 국가는 노년기의 학대에 관한 국가 정책과 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한 계획이나 정책은 노인에 대한 학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세분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5. 노인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기관에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06. 노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 특히 돌봄 제공자, 의료 종사자,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정보 캠페인 및 인식 제고는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은행이나 기타 금융 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교육 및 역량 강화는 노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그들을 금융 학대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7. 국가는 노인 피해자를 위해 공동 대응을 취하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노인을 위해 고품질 및 복합적인 대응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안전한 대피소 제공,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의사 결정 지원 및 법률적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Access to justice)

108. 국가는 학대를 당한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사법제도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대로부터 살아남은 노인은 접근성, 가용성, 적절한 주거의 부족 등과 같은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언어 및 디지털 격차는 추가적인 장벽이 된다. 연령주의, 성별에 따른 차별 및 교차 차별은 이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 치매를 비롯한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09. 국가는 학대로부터 살아남은 노인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연령에 민감한 시스템을 위해 사법 및 법 집행 행위자를 위한 훈련을 개발해야 한다.

### **B. 기타 권고사항(Other recommendations)**

110. 유엔 기구는 지표 및 데이터 수집, 예방 조치, 피해자 지원 및 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관련된 분야에 노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노인의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고 및 권고사항은 포커스 그룹(focus group)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
111. 학자들은 노인에 대한 다양한 폭력이 왜 과소 보고되고 연구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어떤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참여 연구(participatory research)를 설계해야 한다.
112. 학대 분야를 다루는 비정부기구는 활동에 있어서 생애주기적 접근법을 실행해야 한다.



113. 노인이 학대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관 환경을 포함한 장소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기 위해 국가 예방 메커니즘과 같은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